

# 근로자 권리장전

NYC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권리가 있습니다.

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(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, DCWP)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시, 주 및 연방의 주요 법률에 대한 개요를 작성했습니다.

*참고: “직원”과 “독립 계약자”는 다른 근로자 유형에 해당합니다. 권리가 독립 계약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명시되어 있습니다.*

## I. DCWP에서 시행하는 직장 내 권리

-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
- 임시 일정 변경
-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권리
- 소매점 및 공공시설 안전 관리 근로자의 권리
- 식품 배달 노동자의 권리
- 프리랜서 근로자의 권리
- 통근 근로자 혜택
- 식료품점 근로자의 권리

## III. 구직 권리

- 급여 투명성
- 급여 명세 조회 금지
- 직업소개소 이용 시의 권리
- 자동 고용 결정 도구

## II.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장 내 권리

- 최소 임금 및 근로 시간 권리
- 적정 임금제
- 유급 가족 휴가
- 가족 및 의료 휴가 법
- 산재 보상 및 장애인 수당
- 강제 노동 금지
-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
- 차별 없는 직장
- 단결권
- 실업 급여금
- 건강 보험
- 올바른 근로자 분류  
(직원 또는 독립적 계약직)

## I. DCWP에서 시행하는 직장 내 권리

이 섹션은 중요한 NYC 노동법을 다룹니다.

참고: 이 내용은 완벽하지 않으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.

### 보복 금지

권리를 이행하거나 이행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징계, 해고 또는 기타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보복이 의심된다면 DCWP에 제보하세요.

### DCWP 문의

NYC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문의 사항이 있거나 불만을 제기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십시오.

- 웹사이트 이용: [nyc.gov/workers](http://nyc.gov/workers)
- 311(NYC 이외 지역: 212-NEW-YORK)번으로 전화하여 “worker protection law(근로자 보호법)”라고 말씀하십시오

DCWP는 귀하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(법률로 요구되거나 귀하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). DCWP는 이민 상태를 묻지 않습니다.

##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

NYC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제 근무 또는 전일제 근무로 사업체 또는 비영리 조직에서 근무하거나, 가사도우미로 NYC의 가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기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일 년에 최대 40~56시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:

- 건강(질병 또는 예방 진료 포함)
- 가정 폭력, 원치 않는 성적 접촉, 스토킹, 인신매매로 인한 안전 문제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.

- 웹사이트 이용: [nyc.gov/workers](http://nyc.gov/workers)
- 311번으로 전화하여 “Paid Safe and Sick Leave(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)”라고 말씀하십시오

## 임시 일정 변경

근로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 년에 최대 이틀의 근무 일정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포함됩니다. 개인 사정에 포함되는 경우:

- 육아
- 장애가 있는 가족 또는 가정 구성원 보호
- 공익 공청회
- NYC의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법률에 따른 사용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.

- 웹사이트 이용: [nyc.gov/workers](http://nyc.gov/workers)
- 311번으로 전화하여 “Temporary Schedule Change(임시 일정 변경)”라고 말씀하십시오

##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권리

패스트푸드점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것:

- 정기적 주간 일정
- 일정 변경 시 추가 수당
- 새 근로 시간에 따라 우선으로 일할 권리
- 해고, 인원 감축 또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부터의 보호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.

- 웹사이트 이용: [nyc.gov/workers](http://nyc.gov/workers)
- 311번으로 전화하여 “Fair Workweek Law(공정 근로주법)”라고 말씀하십시오

## 소매점 및 공공시설 안전 관리 근로자의 권리

소매점 또는 공공시설 안전 관리 근로자는 첫 근로 시간의 72시간 전에 주간 근로 일정을 전달받아야 합니다.

고용주는 근로 시간 직전에 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.

- 웹사이트 이용: [nyc.gov/workers](http://nyc.gov/workers)
- 311번으로 전화하여 “Fair Workweek Law(공정 근로주법)”라고 말씀하십시오

## 식품 배달 노동자의 권리

앱을 통해 식품 배달을 하는 독립 계약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.

앱을 통한 식품 배달 노동자에 대한 앱 회사의 의무:

- 최저 급여 지급\*
- 각 배송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팁 안내
- 전날에 발생한 총급여와 팁 안내
- 근로자가 식당에서의 이동 거리를 제한할 권리 및 특정 다리 또는 터널 이용을 거부할 권리 허용
- 노동자가 배달을 수락하기 전에 경로 세부 정보 안내
-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임금 지급.

\*최저 급여는 매년 4월 1일 업데이트됩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.

- 웹사이트 이용: [nyc.gov/workers](http://nyc.gov/workers)
- 311번에 전화하여 “Delivery Workers(배달 노동자)”라고 말씀하십시오

## 프리랜서 근로자의 권리

NYC의 독립적 계약직(프리랜서)이 받아야 하는 것:

- 서면 계약
- 근로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완전한 지급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.

- 웹사이트 이용: [nyc.gov/workers](http://nyc.gov/workers)
- 311번에 전화하여 “Freelance Workers(프리랜서 근로자)”라고 말씀하십시오

## 통근 근로자 혜택

노동조합 미가입 정규직 직원이 20명 이상인 NYC 내 사업장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, 고용주는 통근 근로자 혜택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.

- 웹사이트 이용: [nyc.gov/workers](http://nyc.gov/workers)
- 311번에 전화하여 “Commuter Benefits(통근 근로자 혜택)”라고 말씀하십시오

## 식료품점 근로자의 권리

매각된 식료품점에서 근무하는 경우, 새로운 소유주는 90일간의 전환 기간 동안 이전 소유주의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방법을 이용해 주십시오.

- 웹사이트 이용: [nyc.gov/workers](http://nyc.gov/workers)
- 311번에 전화하여 “Grocery Workers(식료품점 근로자)”라고 말씀하십시오

## II.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장 내 권리

이 섹션은 직원을 보호하는 시, 주 및 연방의 주요 근로법을 다룹니다. 또한 독립적 계약직을 포함한 여러 근로자 유형에게 적용되는 NYC 차별금지 근로자 보호 규정도 명시합니다.

참고: 이 내용은 완벽하지 않으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.

### 최소 임금 및 근로 시간 권리

최저 시급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최저 시급 이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- **초과 근무 수당:**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시간 및 급여의 절반.
- **호출 수당:** 일찍 집으로 돌아간 경우 지급.
- **분할 근무 및 시간 연장 수당:** 근무일의 시작과 끝이 10시간 이상 차이가 날 때 지급.
- **유니폼 유지 관리 수당:** 유니폼을 근로자가 직접 세탁하는 경우 지급.

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:

- 고용 시 근로자에게 서면 시급 통지서 제공
- 급여일마다 상세 임금 명세(급여 명세서) 제공.

근로자에게는 다음의 경우와 관련된 추가적인 권리와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.

- 불법적 급여 차감
- 휴식 및 휴게 시간
- 18세 미만 근로자 고용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#### **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**

dol.ny.gov (“labor standards(근로 기준)” 검색) | 888-469-7365

### 적정 임금제

주와 시의 법률에 따라, 계약자는 특정 공공 근로 계약과 공공 자금 또는 세제 혜택을 받는 특정 민간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더 높은 최저 임금 및 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#### **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**

dol.ny.gov (“prevailing wage(적정 임금제)” 검색) | 888-469-7365

#### **New York City Comptroller**

comptroller.nyc.gov (“prevailing wage(적정 임금제)” 검색) | 212-669-3916

## 유급 가족 휴가

다음에서 고용주는 최대 12주간의 직업 보호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.

- 신생아, 입양 또는 위탁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
- 심각한 질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 보호
- 현역 군인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배우자, 동거인, 자녀 또는 부모 지원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### 뉴욕주 유급 가족 휴가

[paidfamilyleave.ny.gov](http://paidfamilyleave.ny.gov) | 844-337-6303

## 가족 및 의료 휴가 법

직원이 50명 이상인 고용주는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최대 12주간의 **무급**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### U.S. Department of Labor

[dol.gov](http://dol.gov) | 866-4-USWAGE (866-487-9243)

## 산재 보상 및 장애인 수당

직무의 직접적인 결과로 질병이나 상처를 입게 된 경우, 현금 수당 및/또는 의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고용주는 임신이나 분만 관련 장애를 포함하여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일시적 장애인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### New York State Workers' Compensation Board

[wcb.ny.gov](http://wcb.ny.gov) | 877-632-4996

## 강제 노동 금지

인신매매라고도 하는 강제 노동은 중대한 범죄입니다. 피해자는 강제, 사기 또는 강요로 인해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.

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을 이용하십시오.

### 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

(U.S. Department of Health &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& Families)

888-373-7888(주 7일 24시간 이용 가능)

**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Division of Immigrant Policies and Affairs**  
877-466-9757(월요일~금요일, 오전 9시~오후 5시)

특정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T 비자라는 이민 구제책이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을 이용하십시오.

**Mayor'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Immigration Legal Support Hotline**  
800-354-0365(월요일~금요일, 오전 9시~오후 6시)

##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

직장은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. 또한 근로자는 직업 위험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**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**  
osha.gov | 800-321-OSHA (800-321-6742)

근로자는 직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관리자로 구성된 직장 안전 위원회를 조직할 권리가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**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**  
dol.ny.gov (“HERO Act(HERO 법)” 검색) | 888-469-7365

## 차별 없는 직장

시, 주 및 연방 법률은 성희롱과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. NYC의 차별금지법은 직원, 독립적 계약직, 인턴 및 구직자에게 적용됩니다.

NYC에서는 고용주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호 대상 카테고리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.

- 나이
- 전과 기록(여러 경우)
- 장애
- 성별
- 이민 또는 시민권 상태
- 출신 국가
- 임신
- 인종
- 종교
- 성적 성향

## 합리적 편의

NYC의 고용주는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근거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.

- 장애(신체 또는 정신)
- 임신, 출산, 수유
- 종교의식
- 가정 폭력(경제적 학대 포함),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 신분

합리적 편의에는 근무 일정, 의무 및/또는 장비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###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

[nyc.gov/humanrights](http://nyc.gov/humanrights) | 311("Discrimination(차별)"이라고 말씀하십시오) 또는 212-416-0197

###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

[dhr.ny.gov](http://dhr.ny.gov) | 888-392-3644

### U.S.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

[eeoc.gov](http://eeoc.gov) | 800-669-4000

## 동등 임금

근로자는 동일한 일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동료들과 임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###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

[ag.ny.gov](http://ag.ny.gov) ("equal pay(동등 임금)" 검색) | 800-771-7755

## 단결권

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근무 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단결하거나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###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

[nlr.gov](http://nlr.gov) | 844-762-NLRB (844-762-6572)

## 실업 급여

고용주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26주간 임시 소득을 제공하는 실업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실업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.

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**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**  
dol.ny.gov (“unemployment(실업)” 검색) | 888-209-8124

## 건강 보험

고용주가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, 근로자는 보장을 상실하거나 이직할 때 의료 혜택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.

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**U.S. Department of Labor**  
dol.gov (“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(직원 혜택 보장 관리)” 검색) | 866-444-3272

## 올바른 근로자 분류(직원 또는 독립적 계약직)

많은 근로자 권리는 직원으로 분류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.

직원 또는 독립적 계약직 분류는 여러 요인과 배정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오분류는 고용주가 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할 근로자를 독립적 계약직으로 취급하거나 근로자에게 "기록을 남기지 않고" 급여를 지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. 오분류는 근로자가 직원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와 혜택을 부정합니다.

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거나 오분류를 신고하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십시오.

**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**  
dol.ny.gov (“misclassification(오분류)” 검색) | 866-435-1499

### III. 구직 권리

이 섹션은 시, 주 및 연방의 주요 법률을 다룹니다.

참고: 이 내용은 완벽하지 않으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.

NYC는 법적 근로 권한이 있는 구직자에게 무료로 도움을 제공합니다. Workforce1 커리어 센터에 관해 알아보려면 NYC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(NYC 소상공인 서비스 부서)에 문의하십시오.

- 웹사이트 이용: [nyc.gov/workforce1](https://nyc.gov/workforce1)
- 311번에 전화하여 “Workforce1”이라고 말씀하십시오

#### 급여 투명성

대부분의 고용주는 구인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#####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

[nyc.gov/humanrights](https://nyc.gov/humanrights) | 311(“Salary Transparency(급여 투명성)”라고 말씀하십시오)

#####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

[dol.ny.gov](https://dol.ny.gov) (“pay transparency(급여 투명성)” 검색) | 888-469-7365

#### 급여 명세 조회 금지

고용주는 고용 과정 중 급여 명세를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#####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

[nyc.gov/humanrights](https://nyc.gov/humanrights) | 311(“Discrimination(차별)”이라고 말씀하십시오)

#####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

[dol.ny.gov](https://dol.ny.gov) (“salary history ban(급여 명세 조회 금지)” 검색) | 888-469-7365

#### 직업소개소 이용 시의 권리

NYC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는 DCWP 면허를 획득해야 합니다.

직업소개소는 일자리를 알선하기 전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수수료는 주에서 법률로 정한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불법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직업소개소는 근로자에게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**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**

nyc.gov/workers | 311 (“Employment Agency Complaint(직업소개소 불만)”라고 말씀하십시오)

## 자동 고용 결정 도구

고용주와 직업소개소는 편견 감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직원과 구직자에게 필수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NYC에서 자동 고용 결정 도구(AEDT)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자세한 정보 또는 이의 제기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.

**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**

nyc.gov/dcwp | 311(“AEDT”라고 말씀하십시오.)